

이벤트 제작 가이드라인

2020.02.20

본 자료는 강남언니의 자산으로,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편집,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안내사항

2. 의료법 준수를 위한 검수 기준

- 1. 의료 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기술
- 2. 치료 방식 및 효과 설명
- 3. 치료 경험담 등의 표현
- 4. 치료 방법 및 성과 비교
- 5. 할인 등 혜택 제공
- 6. 기타 금지 사례

3. 강남언니 이벤트 운영 규칙

- 1. 콘텐츠 관리 기준
- 2. 선정성 판단 기준
- 3. 이벤트 검수 절차

4. 유의사항

1. 안내사항

<강남언니 이벤트 제작 가이드라인>은 강남언니 플랫폼을 사용하는 병원 파트너 대상의 이벤트 제작 규정을 담은 문서입니다. 현행 의료법 규정에 준수하는 선에서 병원의 이벤트가 사용자에게 최적의 콘텐츠로 제공되기 위한 규정이니 해당 문서에 첨부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병원에서 제작한 이벤트는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의료법 준수를 위한 검수 기준'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의료광고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로 인해 강남언니는 병원 파트너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사전 인지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3. 강남언니 이벤트 운영 규칙'에서는 이벤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남언니에서 마련한 콘텐츠 제작 및 선정성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의료법과 강남언니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제작된 이벤트는 일정한 검수 절차를 거쳐 승인이 완료됩니다.

앞으로도 강남언니는 이벤트 콘텐츠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더 좋은 콘텐츠 구성은 없는지 병원 파트너와 함께 고민하고 돕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 의료 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기술

1.1. 의료광고 내 의료 기관 명칭 표시 (의료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0조)

- 의료 기관 명칭은 보건소 개설신고필증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
 - ‘의원’, ‘병원’ 등 종별 명칭에 ‘클리닉’, ‘clinic’ 병기 가능 (센터는 종합병원급에서만 사용 가능)
 - 명칭에 외국어가 포함된 경우, 외국어 철자 표기 또는 한글과 병기 가능

1. 의료 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기술

1. 2. 전문 과목 및 진료 과목, 진료 내용 표시 (의료법 제43조, 시행규칙 제41조)

- 의료 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 과목

- 병원이나 의원(26개):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

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 치과 병원이나 치과 의원 (11개):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 한방 병원이나 한의원 (8개):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1. 의료 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기술

1. 3. 전문의 표시 (의료법 제43조, 시행규칙 제41조)

- 2항에서 규정한 전문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경우 명시 가능
-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전문의 표기 및 세부전문의, 인정의 표기 불가
 - 금지 예) 유방외과 전문의, 국제성형외과전문의
- 미국의사자격 표시는 가능하나, 전문의 표현은 국내 법정 전문 과목만 가능

1. 의료 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기술

1. 4. 의사 학력 및 경력의 표시 (의료법 제43조, 시행규칙 제41조)

-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 불가
-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학력/경력 등 기재 불가
 - 금지 예) TV프로그램, 잡지 출연 이력 (단순 캡처 화면은 사용 가능)
MBA 학위,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등
- 전/현직 경력 구분해 명시해야 하며,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 표기 불가
- 시술 및 수술 건수, 내원환자 수 기재 불가
 - 제3의 공인기관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출시 예외적으로 허용
- 학회 활동 관련
 - 회원 또는 정회원 표현 가능 (금지 예. 우수회원, 종신회원, 최우수 회원)
 - 국제 학회 관련 경력의 경우 국내 공인된 학회와 결연 관계가 있는 학회만 인정
 -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 및 일반적인 초록집에 게재된 논문의 광고 불가
 - 공인학회, SCI, SCI급 논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시에만 가능

2. 치료 방식 및 효과 설명 (의료법 제56조 제 2항 제 2호)

2.1. 최상급 및 극대화 표현 불가

-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허용하지 않음
 - 금지 예) 최고, 최소화, 무제한, 최초, 유일한, 최첨단, 첨단, 최상의, 지역 최초, 지역 1위, 특수, 특별, A+, 전문, 특화, 차별화, 특성화, 명품, 선구자, 선도자, 일인자, ~쑥, ~빠, 완전히

2.2.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 불가

- 결과 보장적 문구 금지(추구나 지향을 나타내는 표현은 가능)
 - 금지 예) 부작용없이, 통증 없이, 완치, 완성, 완비, 완벽, 해결(솔루션), 가장 안전한, 안전한, 해방

2.3. 치료 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 불가

- 치료 기간을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교과서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간 명시 허용
 - 예)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 (X) →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 (O)
당일 퇴원 (X) → 당일 퇴원 지향 (O)

2. 치료 방식 및 효과 설명 (의료법 제56조 제 2항 제 2호)

2. 4. 질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불안감, 공포감 등을 조성하는 문구 금지

2. 5. 외모지상주의 추구 및 성형 조장의 소지가 있는 문구 금지

2. 6. 의료광고 제목과 내용의 방향성 일치 필요

- 단, 제목과 내용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치료의 방향성이 동일하다면 허용

2. 7. 결과 보장적인 의미가 내포된 문구 금지

- 금지 예) 책임진료제, 책임진료, 1:1 책임관리, 책임집도, 정확한

3. 치료 경험담 등의 표현 (의료법 제56조 제 2항 제 2호)

- 3. 1. 환자의 치료 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 사용 불가
- 3. 2.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 치료 경험담 또는 소비자 현혹 광고로 간주하여 사용 불가
- 3. 3.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실존하는 인물의 경험인 것처럼 한 표현 불가
- 3. 4. 시술 전후 사진은 객관적인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허용
 - 해당 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에 대해, 사진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 필요
 - 전후 사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어야 하고, 촬영 시기 또는 경과 기간 명시 필요

4. 치료 방법 및 성과 비교 (의료법 제56조 제 2항 제 4, 5호)

4.1. 의료 직역간 비교광고 불가 (의학/한의학 상호 비교)

- 금지 예)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

4.2. 특정 직역의 시술 방법 등의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자신 직역의 시술 방법 우수성 표현 불가

- 단순 시술 방법의 차이 비교 표현 가능

5. 할인 등 혜택 제공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 56조 제 3항)

5.1. 각종 검사 및 시술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 혜택 금지

- 여러 시술을 종합한 묶음상품의 경우 개별 시술의 정상가/할인가를 명시해야 하고, 고객이 개별 시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단, 여러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할인의 사유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묶음 할인 가능
 - 예) 톨트임 (50만, 마취비포함)과 밀트임 (50만, 마취비포함)을 각각 진행하면 마취/수술 2회에 100만원 이지만, 두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듀얼트임 상품을 통해 마취 1회만 할 경우 마취비 10만원 할인해 90만원에 진행 가능

5.2. 이벤트 당첨자 등 조건 제시를 통해 “특별 할인”, “무료 시술” 및 “금품 할인” 혜택 금지

5.3. 사진 제공 혹은 후기 작성 조건 금지

5.4.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 혜택 금지

5.5.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 3자 유인” 조건 금지

5.6. 50% 이상의 과도한 가격 할인 불가

6. 기타 금지 사례

6. 1. 직접적인 수술 장면, 환부 사진 사용 (의료법 제56조 제 2항 제 6호)

6. 2. 부작용을 적시하지 않은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 제 2항 제 7호)

6. 3.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 2항 제 9호)

6. 4.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 10호)

6. 5. 비급여 비용 할인 및 면제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 13호)

- 금지 예) 합리적 비용, 비용문의, 가격문의, 무료제공 등

6. 6. 수상/인증/보증/추천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 13호)

- 수상경력, 감사장 경력 광고 금지
- 법률로 정한 내용 외 인증/보증 금지
- 국제기구 (예: 유니세프,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등) 또는 정부로부터 인정(인증)받거나 지정받은 내용 인 경우, 객관적 사실만 광고 가능 [기간, 년도 명확히 표기]
- 통계 등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그 발표내용을 가공하여 임의적으로 가공 불가

6. 7.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 1호)

- 금지 예) 지방줄기세포, PRP (자가혈피부재생술), 줄기세포 치료

1. 콘텐츠 관리 기준

1.1. 강남언니 로고 사용 불가

- 일반적인 이벤트에서는 강남언니 로고 사용 불가
- 단, 강남언니 단독 운영 이벤트의 경우 “강남언니 X ○○○성형외과” 등으로 표기 가능

1.2. 병원에 직접 연결되는 연락처 기재 불가

- 카카오톡, 라인, 전화번호 등의 모든 연락처 기재 불가

1.3. 일관된 맥락의 비용 기재 필요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명시
- 대표/카드/상세 이미지에 가격 표시 방식 (정상가/할인가 병행 표시 또는 할인가 단독 표시) 일관성 유지

1.4. 이벤트 제목 및 요약에 특수기호 및 비용 정보 입력 불가

- 특수기호는 5개 (& - _ , .)만 허용하며, 그 외 특수기호 및 가격정보는 검수자가 임의 변경 후 승인 처리
- 예) “★강언병원_앞트임_70★” 이벤트는 “강언병원_앞트임_” 으로 변경해서 등록

1.5. 이벤트 내용과 연관성 낮은 태그 등록시 해당 태그 임의 삭제

1.6.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고 불가

2. 선정성 기준

팝업 배너

- 속옷, 비키니 단독 착용 금지 (원피스, 티셔츠, 바지 등의 겹옷 착용 필수)
- 가슴골, 엉덩이 라인 노출 금지
- 실제 고객 후기 사진 금지
- 선정적인 자세 (예: 가슴 움켜쥐기, 고양이 자세 등) 및 특정 신체부위의 과도한 확대 금지

대표/카드 이미지

- 노출이 심한 속옷 금지 (예: 반컵 미만 브라, 티팬티, 끈속옷 등)
- 선정적인 자세 (예: 가슴 움켜쥐기, 고양이 자세 등) 및 특정 신체부위의 과도한 확대 금지

상세 이미지

- 유두 노출 불가 (단, 남성의 경우, 일반적인 수영복 광고 수준의 이미지 사용 가능)
 - 그림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 가능하나, 실사에 가까운 그림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사용 가능
- 성기 및 음모 노출 불가 (단, 시술 방식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식기 그림 이미지는 사용 가능하나, 실사에 가까운 그림은 사용 불가)
- 선정적인 자세 (예: 가슴 움켜쥐기, 고양이 자세 등) 및 특정 신체부위의 과도한 확대 금지

3. 이벤트 검수 절차

검수 일정 - 당일 처리 원칙

- 평일 업무시간 중에 (오전 10시~오후 6시) 등록된 이벤트 신청은 당일 중 검수를 완료합니다.
- 당일 처리가 어려운 경우 관리자 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능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검수 결과 안내

- 승인 시, 별도 안내 없이 이벤트 일정에 따라 앱에 노출됩니다.
- 반려 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반려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고객센터 운영

- 문의 시간: 영업일 10시 ~ 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 문의 방법: 병원관리자페이지 - 이벤트 탭 - 우 하단의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채팅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해당 문서에 소개된 이벤트 제작 규정은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제작 사례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모든 이벤트의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벤트 주체인 병원에서는 적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시길 바라며, 필요에 따라 법률자문과 보건복지부 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